

제325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2026. 4. 9.(목)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심용탁

- 목 차 -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PMZ평화예술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6
4.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10
5.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7. 대구광역시 달성군 야외무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816호
- 제출일: 2026년 3월 25일
- 제출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6년 4월 8일

2. 제안사유

-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달성군 경관계획이 정비됨에 따라, 경관심의 대상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건축법령에 따른 용도 분류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불명확한 용어 등을 보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공공건축물”, “일반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 기준을 조정(안 별표1 ~ 별표 3)

4. 관계법령

- 「건축법」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경관계획 재수립에 따라, 경관심의 대상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건축법령에 따른 용도 분류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불명확한 용어 등을 보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중점경관리구역 건축물, 공공건축물, 일반건축물의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별표1, 별표2, 별표3에 담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경관 관리를 위하여 심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개발사업 및 건축행위 전반에 대한 경관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중·소규모 개발사업까지 관리 범위에 포함하여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경관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시경관의 통일성과 조화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본 개정안은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을 확대하여 도시경관의 체계적 관리와 공공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 이미지 제고 측면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령의 취지 및 조문에도 위배됨이 없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심의 대상 확대는 민간 부문의 규제 체감도 상승의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심의 절차의 효율화 및 기준의 명확화, 신속한 심의 체계 구축 등의 보완이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817호
- 제출일: 2026년 3월 25일
- 제출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6년 4월 8일

2. 제안사유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에 따라, 수수료 납부 방식을 다양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수수료 반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수수료 납부 방식의 다양화(안 제22조제3항)
- 수수료 반환 규정 신설(안 제22조제3항제1호~제3호)

4.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기획정비 과제에 따라 수수료 납부 방식을 다양화하고 수수료 반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민원인의 편의와 재산권 보호를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현행 조례 제22조는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수입증지의 방법으로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전화화폐, 전자결제 등의 다양한 결제수단을 허용함으로써 민원인의 선택권을 넓히고 납부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비대면 행정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흐름에 부합하며,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여 스마트 행정 구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그리고 과오납 등의 개별 사유에 대한 반환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디지털 행정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민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개정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관련 법령과 취지에 부합하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수입인지·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자정부법

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과료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PMZ평화예술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817호
- 제출일: 2026년 3월 25일
- 제출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6년 4월 8일

2. 제안사유

- 하빈PMZ평화예술센터 위탁운영의 기간 만료 및 수탁기관 재계약 의사표시에 따라 現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적격으로 의결되어 재계약 동의를 의회에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탁대상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규 모	종사자수	비 고
하빈PMZ 평화예술센터	달성군 하빈면 하빈남로 400	지상 1층 연면적 621.08㎡	3명	-

- 위탁대상 사무의 범위 및 내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 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포함 관련 시설운영 지원 및 주민 교육·홍보사업
- 센터 체험프로그램 관련 분석·평가·연구·보고
- 신규 사업 발굴 지원 및 완료사업 사후관리
- 하빈 봉촌리 자원조사 관리, 홍보 및 주민 의견 수렴
-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커뮤니티센터 운영지원
- 그 밖에 위탁자가 마을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조직 및 구성

구분	센터장	팀장	직원	계
인원	1	1	1	3

- 위탁기간: 2년(2024. 6. 1. ~ 2026. 5. 31.)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적격으로 의결되어 재계약 결정
- 성과평가 결과: 적합(평균 82.6점)

4. 관계법령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PMZ평화예술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5. 검토의견

- 하빈PMZ평화예술센터는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및 평화·생태 가치 확산을 위한 거점시설로서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시 사업 추진에 따른 노하우가 유지되어 주민참여 강화를 통한 지역문화 거점 기능 유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현 민간위탁에 대한 성과평과 결과 또한 평균 82.6점으로 운영 성과가 적정하고 관련 법규상 적법하여 본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재계약에 따른 경쟁성 저하, 성과관리 미흡, 공공성 약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성과 평가의 강화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기적인 지도와 점검 및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 위탁대상 사무의 범위 및 내용이 유사한 달성군 선비문화 체험관(송해기념관)의 사례를 살펴보면 예산 절감 부분의 성과가 매우 크므로 본 조례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근거한 달성문화재단에 위탁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달성군 선비문화체험관(송해기념관) 민간 위탁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공개모집에 의한 법인 위탁	문화재단 위탁
270,313	69,631
2025년 본예산	2026년 본예산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PMZ평화예술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위탁운영)

- 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출자·출연한 법인
 2. 제5조에 따른 센터의 업무와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 우선 위탁할 수 있으며,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2030 대구광역시 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819호
- 제출일: 2026년 3월 25일
- 제출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6년 4월 8일

2. 제안사유

- 우리군 20-06 재건축 정비예정구역과 관련하여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및 연장된 날(2025.12.31.)까지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므로 의회 의견청취 후 대구광역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구역명: 달성군-20-06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 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117번지 일원
- 내용: 정비예정구역 해제

○ 해제사유: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및 연장된 날(2025.12.31.)까지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정비예정구역 해제조서

구 분	구역번호	위치	구역면적 (㎡)	사업유형	고시일	비고
기 정	달성군-20-06	화원읍 천내리 117번지 일원	13,687	재건축	2018.12.31.	천내보성
변 경	해 제					

4.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검토의견

○ 본 건은 2018년 12월 31일 우리군 화원읍 소재 천내 보성타운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정비구역 지정 예정일 2020.12.31.)된 이후 1회 해제 기한 연장을 하였음에도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로부터의 정비계획 입안 요청이 없어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상당 기간 정비계획의 입안조차 되지 못한 구역은 사실상 계획의 실효성이 낮은 상태로, 이를 유지하는 것은 행정 신뢰도 저하 및 불필요한 규제 지속의 문제가 있습니다. 해제를 통해 실효성 없는 계획을 정비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정

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30일 이상의 주민공람 시에도 별도의 주민 의견이 없었으므로 본 정비예정구역의 해제(안)에 이견은 없습니다.

- 다만, 노후 주거지의 환경 개선이 지연되거나 개별 개발로 인해 난개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필요 시 정비구역의 재지정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같은 주거 환경 관리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820호
- 제출일: 2026년 3월 25일
- 제출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6년 4월 8일

2. 제안사유

- 법제처의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사업 정비 권고에 따라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면책 규정을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장의 면책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 정비사업에 따른 정비 권고에 따라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 제10조제2항은 공공 시설 운영 수탁자·사용자 등에게 해당 공공시설을 운영 또는 사용 하면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을 전부 면책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1)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면책 조항을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또한, 해당 면책규정을 삭제하여도 수탁자·사용자 등에 대한 손해 배상은 「민법」의 손해배상법리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1)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821호
- 제출일: 2026년 3월 25일
- 제출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6년 4월 8일

2. 제안사유

- 법제처의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사업 정비 권고에 따라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면책 규정을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장의 면책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 정비사업에 따른 정비 권고에 따라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 제6조제2항은 공공 시설 운영 수탁자·사용자 등에게 해당 공공시설을 운영 또는 사용 하면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을 전부 면책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²⁾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면책 조항을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또한, 해당 면책규정을 삭제하여도 수탁자·사용자 등에 대한 손해 배상은 「민법」의 손해배상법리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야외무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 의안번호: 제2822호
- 제출일: 2026년 3월 25일
- 제출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6년 4월 8일

2. 제안사유

- 법제처의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사업 정비 권고에 따라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면책 규정을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야외무대 운영시간 표기 수정(안 제3조제2항)
- 지자체장의 면책 규정 삭제(안 제6조제2항)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 정비사업에 따른 정비 권고에 따라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 제6조제2항은 공공 시설 운영 수탁자·사용자 등에게 해당 공공시설을 운영 또는 사용 하면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을 전부 면책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³⁾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면책 조항을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또한, 해당 면책규정을 삭제하여도 수탁자·사용자 등에 대한 손해 배상은 「민법」의 손해배상법리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3)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